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51호 2018. 12. 2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5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96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966호 2035년 삼척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6
- 삼척시 공고 제96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7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 - 152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8.

삼 척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148-3 외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 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12. 2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52-1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148-3	20181228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385, 386, 387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323-16	20181228	건물신축	20090710	인근에 위치한 산 명칭 활용	
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28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길 242	20181228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2길 80	폐지	20181228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86, 산13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2길 68	20181228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6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148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덕풍길 1043	20181228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지형지물(덕풍계곡) 명칭활용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변1길 35	20181228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칭사용(용화해변길분기)	
8		이	하	여	백		
9							
10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비고
		주소	고시일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52-16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148-3	20181228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385, 386, 387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청옥로 4323-16	20181228	건물신축	20090710	인근에 위치한 산 명칭 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28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길 242	20181228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폐지	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2길 80	폐지	20181228	건물철거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5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리 86, 산13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구사2길 68	20181228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부여	6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148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덕풍길 1043	20181228	건물신축	20090626	지역지명,지형지물(덕풍계곡) 명칭활용
부여	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해변1길 35	20181228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명칭사용(용화해변길분기)
		총계	7 건				

삼척시 공고 제2018-96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8.12.21. ~ 2019.01.04.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01.05.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재○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상천기리 35	
	목조 (1층:56.84㎡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21.

삼 척 시 장

삼척시 공고 제2018-966호

2035년 삼척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2035년 삼척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12. 28.

삼척시장

1. 공청회 개최목적

- 2035년 삼척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9. 1. 11.(금) 14:00
- 장 소 :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시청 본관 1층)

3.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 목표연도 : 2035년 ○ 계획인구 : 13만인
- 계획면적 : 1,191,569km² ○ 상세내용 : 게재 생략

4. 의견 제출 : 공청회 개최 당일 및 개최 후 14일간 서면으로 삼척시청 도시과

(FAX :033-570-3182)로 의견 제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18-96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 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8.12.26. ~ 2019.1.9.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1.10.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윤○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자원동 45
	목조 (1층:77.2㎡ 주택, 1층:21㎡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26.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